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13호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학교급식 식재료의 정의에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표시 및 무항생제 축산물을 추가하여 관련 법령과의 조화 및 식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 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기한 및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 위탁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이 「축산법」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으로 이관됨에 따라 친환경농·수·축산물수급체계 및 식재료의 정의에 무항생제 축산물을 추가하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중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표시한 식재료로 규정함(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

나. 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기한을 매년 7월말까지를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함(제4조제2항)

다.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위탁 범위를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변경함(제9조제2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주소 : 경기도 광주

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전화 : 031-8008-8062, 팩스 : 031-8008-6718, 전자메일 : doxa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및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수산물 · 축산물”을 각각 “수산물 · 축산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로 하고, 제3조제7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획득하고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표시한 식재료

제4조제2항 중 “7월말까지 수립하고”를 “수립하고”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일부(물류)를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일부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농정해양국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박종민
	담당・팀장 직위・성명	학교급식팀장 이연숙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수의주사 김성환(8008-806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6. ----------수산물·축산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7.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나. ----------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축산물	---------- ---------- ---------- --- 수산물·축산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획득하고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표시한 식재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생 략)	제4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② ---------- -- 수립하고----------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① (생 략)	제9조(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일	② ---------- ---------- 일부를 「경

부(물류)를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 ③·④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규정)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시대상품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2.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생산하거나 도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국내 식품제조가공업 중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으로 인증한 것을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가. 식품원재료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식품

나. 분쇄, 절단 등의 방법으로 식품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한 식품

다. 나목의 식품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

제3조(인증 대상 등) ① 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으로 한다.

1.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의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가공식품
2.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의 함량을 1순위로 사용한 가공식품

② 도지사는 인증을 위해 가공식품을 검사할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재료로 사용되는 식품의 유형에 대하여는 식품유형별 대표품목을 검사하여 인증할 수 있다.

축산법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7099호, 2020. 3. 24.>

제4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항생제축산물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 받은 인증기관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신청한 경우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2조의3제1항 또는 제4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2장의 제목, 제4장의 제목,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부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 각각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9. 8. 27., 2020. 3. 24.>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제34조(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 · 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2020. 3. 24.>

③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 제조 · 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9. 8. 27., 2020. 3. 24.>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 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⑤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제목개정 2019. 8. 27., 2020. 3. 24.]

붙임 2 **현행 조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경기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하여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1.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의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2.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3.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개정 2019.3.13.>
4. 학교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원의 확보 [신설 2020.10.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급식"이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친환경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도지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6.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수·축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축산물
   다. 친환경제품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및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라.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축산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사. 그 밖에 도지사 및 시·군의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8.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실행계획의 수립·관리 및 정책 개발, 올바른 친환경 식생활에 대한 교육·체험 지원, 기초단위급식지원센터의 협력 강화, 친환경식재료 생산·유통관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 등 효율적 친환경학

교급식의 실현을 위한 관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제4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제11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친환경학교급식의 지원규모, 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친환경농·수·축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7. 방학 및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경기도내 농축수산업 생산하는 사람과 단체의 참여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제5조(지원 대상)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으로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9.3.13.]

제6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① 도지사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지역교육지원청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 학교 등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함께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유통 가공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4. 교육청 및 학교,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5.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및 안전성 관리
7.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및 식재료 공급·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
8. 교육청,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일부(물류)를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사항은 제11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의2(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급식의 중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의 안정적·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하여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의 생산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규모, 지원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등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농·수·축산물의 생산지는 경기도내 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

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피해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11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경기도교육청 관련 실・국장
3. 경기도의회 추천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6.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장
7. 시・군 급식지원센터 대표
8. 학교 영양사 단체 등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9. 교육청 추천 교장 또는 교사
10.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추천인, 농어업관련 단체 추천인
11. 그 밖에 급식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경기도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학교급식지원계획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2. 제4조의 학교급식지원계획 실행에 따른 평가
3. 학교급식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4. 그 밖의 친환경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6호 내지 9호의 위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제척 · 기피 ·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이 제8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 및 위촉・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학교급식의 중단으로 식재료를 공급하지 못한 계약재배 피해 농업인 등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